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로 집행하는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심의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소관 위원회를 통한 설계심의 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타 기관 설계심의위원을 공동활용 하도록 함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제외된 기타공공기관 및 국책연구소 소속 건설기술 분야 전문가도 설계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정수 확대

(안 제7조, 제9조, 제17조)

- 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준정비분과위원 정수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전체 위원 정수는 6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
- 2)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정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전체 위원 정수는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

위원회 설계심의분과 위원 공동 활용 의무화(안 제17조, 제19조)

다. 심의위원 자격조건에 기타공공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소속 전문가 추가(안 별표 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600명”을 “800명”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100명”을 “200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을 “30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70명”을 “100명”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7항”을 “제7항,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5항까지 중”을 “제5항까지 및 제10조 중”으로, “제9조제3항,”을 “제9조제3항,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 ⑦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라목·사목·아목(아목에서 실시설계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토교통부장관(제2호의 경

우 다른 시·도지사, 제3호의 경우 다른 발주청, 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추가 임명이나 위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2. 다른 시·도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3.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제19조제7항 중 “구성하되,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까지 및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9조제3항 중”을 “제9조제3항 및 제10조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⑧ 발주청은 제5항제1호다목·마목·바목(바목에서 실시설계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토교통부장관(제2호의 경우 다

른 시·도지사, 제3호의 경우 다른 발주청, 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추가 임명이나 위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2. 다른 시·도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3.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별표 2 제1호가목2) 본문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이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만, 3급 기술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이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다.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에 위원의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운영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이 표에서 “소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소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 감점내용을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라.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60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 <u>800명</u> - -----.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 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 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 ----- ----- ----- ----- -----.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u>100명</u> 이내의 위원	1. ----- <u>200명</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 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 함한 <u>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u> <u>30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① ----- ----- --- <u>300명(특별시의 경우에는</u> <u>330명)</u>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⑥ -----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 10
----- 0명 ----- 구성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라 목·사목·아목(아목에서 실시설계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토교통부장관(제2호의 경우 다른 시·도지사, 제3호의 경우 다른 발주청, 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하고

⑦ (생략)

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5

전문적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추가 임명이나 위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2. 다른 시·도의 지방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

3.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설계
심의분과위원회 위원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

----- 제7항, 제10
조-----

----- 제5항까지 및 제10조 중 -----

----- 제9조제3항, 제10
조, -----

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제15조제3항
중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
목·사목 및 아목”은 “제17조제
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
목 및 아목”으로 본다.

⑨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⑥ (생략)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
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
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
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
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
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
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
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

-----.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⑪ ----- 제10항-----

-----.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⑥ (현행과 같
음)

⑦ -----

----- 구성
한다.

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⑧ 발주청은 제5항제1호다목·
마목·바목(바목에서 실시설계
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을 심의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토교통부장
관(제2호의 경우 다른 시·도지
사, 제3호의 경우 다른 발주청,
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
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3
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기술
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
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
운 사정 등으로 추가 임명이나
위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2. 다른 시·도의 지방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

3.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설계
심의분과위원회 위원

⑧ (생략)

⑨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로 본다.

⑩ (생략)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⑩ -----

----- 제5항까지 및 제10조-----.
----- 제5항까지 및 제10조-----
----- 제9조제3항 및 제10조 중 -----
-----.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⑫ ----- 제11항-----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연 락 처	(044) 201 - 3564
	(044) 201 - 3565